

보도시점 2024.1.30(화) 11:00부터 사용

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, 국무회의 의결

- 헌법 가치 훼손,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, 특조위의 구성과 운영에 공정성·중립성 결여 등에 대해,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줄 것을 요청
- 재의요구와는 별도로 특별법 취지에 따라 유가족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지원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「10·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」추진
- □ 정부는 오늘(1월 30일) 제6회 국무회의에서 「10・29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」에 대해 「대한민국 헌법」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하였다.
 - 정부는 ^①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, ^②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^③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・사법 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, ^④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.
- □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, 특히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,
 -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**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・야간에**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- □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『10·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』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・추진하기로 했다.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,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.
 - (재정적 지원)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,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. 또한, 현재 진행중인 민·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.
 - (일상회복 지원) 참사로 인해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,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.
 - (경제활성화 등)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, 구조·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.
 - **(추모시설)**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.
 - (지원조직) 국무총리 소속으로 「가칭 10・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」를 구성,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.
 - □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**연대와 협력**을 통해, **재난이**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.
 -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**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**을 **내실 있게 준비**하고 **이행**할 것이며,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.

공동배포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348)
	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제룡 (044-205-61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유진 (044-205-6116)







참고

재의요구 사유 주요 내용

① 이 법률안은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함

-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,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, 자료제출 요구 거부를 사유로 압수·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

② 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· 중립성 결여로, 업무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

- 다수 일방에 의해 위원장을 포함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

③ 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큼

- 조사위원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책임소재 규명, 행정부의 역할인 국가 등의 재난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를 담당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

④ 이 법률안의 주 목적인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·경수사,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왔고, 인파사고를 대비한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·시행중임

-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참사원인, 구조활동, 대응의 적정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·검찰 수사, 국정조사,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이미 이루어졌음.
- 『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』 마련('23.1.27)하고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유형에 포함하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을 개정('24.1.16)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음

⑤ 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일선 현장의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